

건설현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성별	남성	나이	만 48세	직종	건설현장 소장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망 ○○○는 □사업장에 2015년 8월 입사하여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5월 2일부터 군부대 내 건설현장에 현장소장으로 배치 받아 현장 근처 40분 거리의 민박집에서 현장직원들과 단체숙소생활을 하며 근무하였다. 2018년 5월 15일 오후 10시 경 근로자는 숙소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동료 근로자가 응급구조대를 호출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이송 중에 증상이 완화된 근로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추가검사의 권유에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16일 0시경에 숙소로 귀가하였고, 이후 혼자 잠을 자다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동료가 발견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이 추정되었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자가 휴식기간이 없이 높은 고도에 위치한 현장에서 숙소생활을 하면서 무리한 근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2019년 1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16일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망 ○○○은 □사업장에 2015년 8월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장소장은 발주 받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장을 대표하는 현장대리인으로 사업장으로부터 각종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와 관련된 일의 관리 통제 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공사 시공에 관한 공정관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노무관리, 안전 및 경리업무나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 지급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해부학적 분류

- 심혈관계 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망 ○○○은 2018년 5월 15일 퇴근 이후 숙소로 복귀하여 오후 10시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구급이송차량을 호출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증상이 완화되었다. 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은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며 낮 시간에 다시 진료를 받겠다고 접수를 취소한 후 5월 16일 00시 숙소로 귀가하였다. 이후, 오전 6시 50분경, 근로자는 근로자 동료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체 부검결과,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출혈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조직학적 검사 상 최근 발생한 심근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특히 왼 심장동맥에서 심실로 들어가는 혈관이 중등도로 막혀있으며, 동시에 왼 쪽 심실 후면부에서 출혈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말초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 유기인등의 농약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유가족 및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1995년 이후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008년부터 본태성고혈압 및 제2형 당뇨병으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사망당시 흡연을 했으나 흡연력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음주는 한 달에 한번 1-2잔정도 했다고 유가족은 응답하였다. 가족력으로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은(남, 1970년생) 만 48세가 되던 2018년 5월 15일에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2015년 8월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5월 2일부터 해발고도 약 1400m에 위치한 군부대 내 작업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인근 숙소에서 출퇴근하며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환경적 위험요인에는 심리적 스트레스(분노, 불안), 장시간 근무, 계절 변동(겨울)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근로자는 최근 12주간 공사 준공 마감과 관련하여 평소와 다른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야간작업이나 연장 근로는 없었고,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1400m 고도에서 작업하여 발생 당일 최대 0.15기압의 변화가 있었지만 심근경색증 발생이 숙소 복귀 후 오후 10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기압이나 기온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